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보고

1. 관련근거

- 가. 사규관리규정 제10조(입안)
- 나. 철도안전법 제8조 「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」
- 다. 전기2사업소-986호('17. 6. 27.) 『5~8호선 계측기 교정사업 추진계획 알림』
- 라. 경영감사처-2204호('17. 11. 23.) 『2017년 종합검사 결과 조치요구』
- 마. 기술본부장-22호('18. 1. 11.) 『계측기 교정업무 표준화 계획』
- 바.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158조 「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의 교정」

2. 계측기 검·교정 업무방식 표준화 및 직제규정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체계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가. 주요개정내용

- 1) 계측기 검·교정
 - 차량분야 외 교정부서 변경 : 전기2사업소 ⇒ 전자2사업소
 - 차량분야 : 외부위탁 교정 업무 수행
- 2) 직제규정 개정사항 현행화
 -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사항('17.10.16.)반영
- 3) 오기(참조조문, 단순오기) 사항 수정 반영

나. 향후추진계획

- 개정(안)에 대한 부서별 의견조회 ⇒ 부패영향평가 의뢰 ⇒ 사규심의 의뢰

- 붙임 1.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1부.
2.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변경후 전문 1부. 끝.

차장 전재현	부장 김종화	팀장 손태진	차장 심재창
본부장 04/09 김석태			

협조자 차장 송재찬	차장 윤재국	차장 추돈호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시행 안전계획처-2746 (2018.04.09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전화 6311-9454 전송 6311-4122 / nyx112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